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3. 26.(화) 11:00 < 3.26.(화) 석간 > 배포 2024. 3. 25.(월)

엔지니어링 학력·경력 기술자도 특급기술자 된다

-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개정안 3.26(화) 국무회의 의결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'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개정'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이 3.26.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현재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① 국가기술자격자와 ② 학력·경력자로 구분되나, 학력·경력자의 경우 중급기술자까지만 등록 및 승급이 가능했다. 이로 인해 학력·경력자는 국가기술자격자에 비해 채용·승진·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고, 석·박사급 인재의 업계 이탈, 신규인력 유입 저해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.

* (기술자 등급체계) 초급 → 중급 → 고급 → 특급 → 기술사
* (예시) 현재는 해외 박사학위 + 20년 실무 경력 보유자도 중급기술자로 분류

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, 박사학위+관련 경력 4년, 석사학위+관련 경력 9년, 학사학위+관련 경력 12년, 전문학사학위+관련 경력 15년 보유 시 '특급기술자'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또한, 박사학위+관련 경력 1년, 석사학위+관련 경력 6년, 학사학위+관련 경력 9년, 전문학사학위+관련 경력 12년을 보유하면 '고급기술자'가 될 수 있다.

* 제3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('23.6) 「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검토」 관련 후속 조치

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,900명의 학력·경력 기술자가 '고급기술자'나 '특급기술자'로 승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,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 금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엔지니어링디자인과	책임자	과 장	이재석 (044-203-45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원 (044-203-434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□ 학력·경력자 등급 특급까지 허용(안 [별표 2])

【현행】

등급	자격자	학경력자
기술사	•기술사	-
특급 기술자	•기사+10년 •산업기사+13년	<신 설>
고급 기술자	•기사+7년 •산업기사+10년	<신 설>
중급 기술자	•기사+4년 •산업기사+7년	•박사 •석사+3년 •학사+6년 •전문학사+9년
초급 기술자	•기사 •산업기사	•석사 •학사 •전문학사+3년

【개정안】

등급	자격자	학경력자
기술사	좌동	-
특급 기술자	좌동	•박사+4년 •석사+9년 •학사+12년, •전문학사+15년
고급 기술자	좌동	•박사+1년 •석사+6년 •학사+9년 •전문학사+12년
중급 기술자	좌동	좌동
초급 기술자	좌동	좌동

참고 2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요

□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현황

○ **(등급체계)** 5등급 : 초급 → 중급 → 고급 → 특급 → 기술사

○ **(등급제 활용)** ①사업수행능력평가(PQ)시 기술자의 **전문화 정도* 기준**, ②직접인건비 산정시 등급별 **노임단가 기준**, ③**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****

* PQ 전문화 정도 등급계수 : (기술사) 50, (특급) 40, (고급) 30, (중급) 20, (초급) 10

** 기술인력 요건 : 특급기술자 1명 이상 포함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 필요

○ **(기술자 현황)**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총 167,027명 중 자격 보유자는 102,802명(61.5%), **학력·경력자는 64,225명**(38.5%)('23. 10월 기준)

【참고】 他 기술자등급제도 현황

구 분	자격증 보유자	학·경력 보유자
①엔지니어링기술자	기술사-특급-고급-중급-초급	중급-초급
②건설기술자 ③측량기술자	특급-고급-중급-초급 *(기술사 아니라도 특급 가능)*	특급-고급-중급-초급 *(특급은 박사출신만 가능)*
④소방기술자 ⑤교통영향평가기술자	특급-고급-중급-초급 *(기술사 아니라도 특급 가능)*	특급-고급-중급-초급
⑥전력기술자	특급-고급-중급-초급 *(기술사만 특급 가능)*	중급-초급
⑦해양조사기술자	특급-고급-중급-초급 *(기술사 아니라도 특급 가능)*	초급
⑧정보통신기술자	특급-고급-중급-초급 *(기술사만 특급 가능)*	중급-초급
⑨전기공사기술자	특급-고급-중급-초급 *(기술사 또는 기능장만 특급)*	중급-초급
(소프트웨어기술자)	(기술사-특급-고급-중급-초급)	(초급)

* 상기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제도(5단계)는 과거 제도로서 '12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없음

참고 3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 변천사

□ (1974년) 「기술용역육성법」 제정(1973년) 후 인건비(노임단가)를 기준으로 한 기술자 등급제도를 도입

○ 국가기술자격자(기술사/1급/2급/3급),
학력·경력자(인정기술사*/1급/2급/3급)로 운영

* 70년대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박사학위 소지자가 3년 이상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술사와 동등하게 대우(현재 엔산법에서 폐지)

□ (1977년) 기술자 등급제도를 **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자 동일**하게 개정

○ 국가기술 자격자, 학력·경력자 모두(특급/고급/중급/초급)으로 운영

□ (1997년) 「기술용역육성법」을 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으로 개정(1992년) 후 **국가기술자격자 등급에 "기술사" 추가**

○ 국가기술자격자(기술사/특급/고급/중급/초급),
학력·경력자(특급/고급/중급/초급)로 운영

□ (2014년) 「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」을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으로 개정(2010년) 후 학력·경력자 등급 상한을 **"초급"으로 하향**

○ 국가기술자격자(기술사/특급/고급/중급/초급), 학력·경력자(초급)

* '05년 「기술사제도 개선방안」에 따라 학력·경력자의 승급을 불인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이후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에서도 학력·경력자는 '초급'으로만 인정되도록 변경('11.1월 개정, 시행 '14.3월)

□ (2020년) 학력·경력자 등급 상한을 **"중급"으로 상향**

○ 국가기술자격자(기술사/특급/고급/중급/초급), 학력·경력자(중급/초급)

<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변천사>

구분	← 인건비(노임단가) 기준으로 기술자 등급 활용 →			← (엔)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도입('11년 이후) →	
	학력·경력자 등록·승급 허용			학력·경력자 등록·승급 불허	학력·경력자 등록·승급 일부 허용
	1974~1977년	1977~1997년	1997~2014.3월	2014.4월 이후	2020.10월 이후
자격증 취득자	기술사/1급/2급/3급	특급/고급/중급/초급	기술사/특급/고급/중급/초급	기술사/특급/고급/중급/초급	기술사/특급/고급/중급/초급
학력·경력자	인정기술사/1급/2급/3급	특급/고급/중급/초급	특급/고급/중급/초급	초급	초급/중급